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2
----------	-----

제출년월일 : 2005. 2. 23.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주차장법령에서 위임한 주차장이용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 하고 주차장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호다목)
-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안 제17조제1항)
- 다.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부여(안 제17조제2항)
- 라.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조치사항(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0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과징금 처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0 입법예고 - 2005. 1. 10 ~ 2005. 1. 29 (20일간)

-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수첩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하며, 동조제3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불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p> <p>1.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p> <p>2.(생략)</p> <p>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p> <p>가. <u>장애인복지법</u>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p> <p>나. <u>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u>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p> <p>다.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u> 제2조제3호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p> <p>4. ~ 5(생략)</p> <p>제17조(과징금 처분) (신설)</p>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현행과같음)</p> <p>1. 「<u>도로교통법</u>」————</p> <p>————</p> <p>2.(현행과같음)</p> <p>3. —————</p> <p>————</p> <p>가. 「<u>장애인복지법</u>」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p> <p>나.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p> <p>————</p> <p>다.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p> <p>4. ~ 5(현행과 같음)</p> <p>제17조(과징금 처분) ① <u>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u></p> <p><u>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u>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불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u>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p>